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후환경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기후환경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제2항 신설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범위가 시·군에서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, 자치구 조정교부금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,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에서는 잉여금의 활용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5. 1일부터 5.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5. 23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,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,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07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후환경과장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제2항 신설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세입에 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세출에 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잉여금 활용에 대한 규정(안 제4조의2)
- 마. 회계에 관한 준용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24. 5. 1.~5. 21.)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 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2제2항 및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호,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(이하“특별회계”이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이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배분금액”이란 대구광역시가 화력발전소에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.
- ② “시 자체사업”이란 화력발전소에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
2.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·지원사업
2.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관련 홍보·교육사업

3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
4.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(잉여금의 활용) 잉여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14. 5. 28.>

④ <생략>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<생략>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·군에 균등 배분한다.

<신설 2024. 2. 20.>

1.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

2. <생략>

③ <생략>

[시행일: 2024. 4. 1.] 제29조의2

□ 「지방세법」
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~다. <생략>
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생략>

나. <생략>

다.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화력발전”이라 한다)

(이하 생략)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<생략>
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9. 12. 31., 2021. 12. 28.>

1. <생략>

2. <생략>
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 (※ 0.3원 ⇒ 0.6원)

시행: 2024. 1. 1.(개정: 2023. 12. 29.)

(이하 생략)

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

제136조(과세대상) ① <생략>

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20. 12. 31.>

1. <생략>

2. <생략>

3. 화력발전: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.

(이하 생략)

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3. 21.)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 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%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
3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4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
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6. 그 밖에 구청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